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7th February 2015

- ▶ WHERE IS GRACE CHANG?:
천국방문기~2
- ▶ ABOUT WRITERS2
- ▶ COVER STORY: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환규제
개선방안3
- ▶ FTA NEWS:
한-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
.....5
- ▶ VOICES FROM THE FIELDS:
현지에서 본 베트남 투자, 무엇을
유의하여야 하나?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10
- ▶ CUSTOMS PRECEDENT ⑥7
.....12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천국방문기 ~



장승희
대표 관세사

한파가 물러간 1월 중순 동두천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의 금식수련회에 소박한 기대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밀린 잠을 자며 쌓여있는 책들을 후닥닥 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식에 따른 건강증진 및 몸매 관리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 한 해의 시작으로 의미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수도원은 산 아래쪽의 언덕 위에 있고 언덕 아래에는 작은 대안학교와 기숙사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하나씩 배정된 기숙사방에는 2층 침대와 옷장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는 작은 방이지만 개별 화장실과 샤워시설에 감격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매일의 일정은 말씀과 기도, 산행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람에 맞추어 일어나 언덕 위의 수도원으로 한걸음씩 올라가며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 2번의 말씀 공부시간은 성경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영적인 성숙에 더하여 지적인 발전도 충족시켜줍니다. 특강을 듣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의 근육에서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에 숙소로 내려오면 식사대용으로 따뜻한 물과 산야초로 만든 효소를 조금 마십니다. 방 청소를 간단히 하고 나무침대 위의 슬리핑 백에 들어가 책을 읽습니다. 잠이 오면 자고, 깨어있으면 책을 읽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언덕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새벽기도를 위해 언덕을 오르며 또 저녁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며 반짝이는 달과 별들을 올려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아니라도 서울 도심에 비해 선명한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후의 산행은 침묵하며 30분을 오르고, 2시간 가량 천천히 내려오며 담소를 나눕니다. 충만해지는 마음과 달리 비위지며 깨끗해진 몸은 폭신한 눈길에서 가볍고 상쾌합니다.

열흘이라는 긴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점점 비워지고 맑아집니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목적적이고, 과정적이고, 결과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몸은 건강해졌고,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생각은 단순해졌습니다.

수련기간이 끝나고 하산하여 세상으로 돌아오며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주어진 삶에 집중하면,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 강남 한복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자~! 신한가족의 올해 목표입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환규제 개선방안



최혜지 관세사
(h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본부 통관 3팀 팀장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수출입통관, FTA 및 AEO 컨설팅 수행

FTA News-

한-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



신종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Voices From The Fields-

현지에서 본 베트남 투자, 무엇을 유의하여야 하나?



박재호 관세사
(jhpark4321@naver.com)

PROFILE

- KOICA 파견 베트남정부 자문관
- 前 부산-서울-인천공항세관 통관국장
- 前 단국대-배화여대 외래교수
- 前 한국 관세청 연수원 교수부장 등 국가행정, 공공정책 37년 종사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Customs Precedent @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세 선료의 과세 여부



김혜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관리사

Cover Story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환규제 개선방안

I. 개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전담반(TF)'의 논의를 통해 7월 31일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 중에서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1. 자유거래 확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한도, 자본거래 신고예외, 제3자 지급 신고예외, 상계 신고 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기존 건당 1천불에서 2천불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소액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소액송금에 대한 은행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채권* 회수기간 연장 (시행령 제 12 조 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회수기간을 3년으로 2배 연장하였다. 이는 기업에게 채권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불요불급한 외화자금 유입을 유예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대외자산을 다른 투자활동에 활용할 경우 회수기간 연장 시 다른 투자를 위한 대기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간 연장이 불법적인 재산반출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회수의무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규제의 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 대외채권이란?

수출대금, 금전대여금,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 자금,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 해외에서 지급받은 외화자산 등을 말한다.

3. 제 3 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제 5-10 조)

기존에는 직접당사자가 아닌 3자를 통해 지급·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 (예. 해외 광고,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대한 지급 등의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천불~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 절차로 완화하였다. 이는 불법자산반출, 환치기 방지 등 신고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대외거래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4. 장기제작 물품의 수입대금 선지급 신고 예외 (외국환거래규정 제 5-8 조)

기존에는 수입물품 수령 1년 이전에 수입대금 (2만불 초과)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했으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장기제작물품의 수입 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5.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외국환은행이 소재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외국환거래를 위해 지역 농·수협에서도 연간 3만불 이내의 외화송금을 허용하였으며, (규정 제 2-1 조의 3) 누계 50만불이하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함(규정 제 9-5 조)으로 써, 신속하고 간편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다.

III. 맺음말

수출입기업은 이번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환 거래 시의 업무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및 경제전반의 성숙도의 진전을 감안하여 점진적, 선별적으로 완화(예. 통계목적의 모니터링의 단계적 폐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형식적인 절차 과감히 폐지 등)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업도 정부가 점차 완화하고 있는 외국환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최선의 의무를 다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향후 외국환 규제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혜지

hjchoi@customsservice.co.kr

한-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

1. 들어가며

2014년 연말은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한 단계 더 넓어지는 시기였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타결 및 발효했으며, 이어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간 회담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영 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였다.

2. 관세양허 내용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우리나라는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 /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 1차산품을 주로 수출)를 갖고 있는 바,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선진국으로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양허와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전 품목을, 우리나라는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다.

**(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품목 7년 내 관세철폐 (우리나라)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농림수산물 업종의 보호를 위해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의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품목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

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다.¹

3. 원산지증명절차

한-뉴질랜드 FTA 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라고 명명된 별도의 원산지증명양식지(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내에 규정)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 증명 방식)

최초 신고일(수입신고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포괄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의 면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4. 원산지검증

한-뉴질랜드 FTA 에서는 협정문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3.24 조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검증(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 양식 국문본]

<p>예시 2 원산지 신고서</p> <p>원산지 신고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약정지침 기재) 인쇄제본 쓰거나 타자본 적시요.</p>		<p>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p> <p>- 이 표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표시상 또는 표시의 관련된 모든 위험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p> <p>- 본인은 이 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p> <p>- 그 상품은 관세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상지로 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p> <p>이 신고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_ 쪽으로 구성된다.</p>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참조 번호:	2. 포괄증명기간 (연도/월/일) (연도/월/일)	12. 지방관청의 지명: 회사:	회사: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참조 번호: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이름: 직위:	전화번호: 팩스:
5. 상품(류)의 증명	6. HS 품목번호	7. 관세 기원 명칭	8. 가치 평가
		9. 가치 평가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검증)을 규정하고 있다.²

한편,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공무원은 참관자로서 검증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접검증의 부담에 대하여 일부 경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검증기간과 관련해서는 수입국은 검증방문 시작으로부터 일년 이내에 원산지 결정의 결과 및 그 법적 근거, 사실관계를 수출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마치며

한-뉴질랜드 FTA 의 타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정말 넓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하지만, 발효된 FTA 수가 10 여개가 넘어감에 따라 복잡다양한 개별 FTA 에 대하여 더 많이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FTA 발효국의 수만큼 원산지검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생각해 볼 때, 단편적인 FTA 의 활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종합적이고 적법한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FTA 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중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¹ 한국-뉴질랜드 FTA 타결선언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11.17

²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Voices From The Fields

현지에서 본 베트남 투자, 무엇을 유의하여야 하나?

글 쓴 취지

33년간의 공직(관세청)에서 명예퇴직 한 후 KOICA(외교부 산하 개도국 무상원조 전담 기구) 자문관 공개모집에 선발되어 베트남 하노이에 온 지(2012.9.10.) 2년 5개월이 된다.

처음 1년은 베트남 행정부(기획투자부 MPI, 한국의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에서 FTA 국제통상, 경제개발정책, 공공조직관리에 관하여 강의·자문하고 교재를 편찬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음, 1년 5개월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산하기관에서 지역의 당 지도자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경험을 주로 전파하고 있다.

베트남 당정 기관에서 겪은 나의 경험과 소감을 바탕으로 베트남 투자시 유의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알려 베트남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경제발전 가능성, 국가체제, 경제정책, 물류비용, 투자·경영 환경 등 분야별 유의사항

첫째)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한국업체의 투자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도국이다.

KOICA는 42개국 개도국에서 무상원조(ODA)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사업규모, 인원, 지원액이 많다. 비록, ODA가 '인류상생'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이지만 경제·외교 전략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베트남에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하고 있는 60개국 중에서 한국의 투자가 73.2억불로 총투자금액의 36.2%를 차지하여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나라가 많고 한국 업체가 가장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2015 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목표는 6.2%이며 2014 년 경제성장은 잠정적으로 5.98%로 보도되고 있다.

둘째) 베트남의 국토개발 정책방향 및 물류비용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1.5 배 크기인 베트남은 크게 보아 수도 하노이 중심의 북부, 다낭 중심의 남부, 호치민 시(구, 사이공) 중심의 남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5 년 베트남 통일 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북부 지역 개발에 국토개발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하이퐁 항 (한국의 인천항 같은 곳)과 하노이 북부 Bac Ninh, Thai Nguyen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중점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업체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LG, 삼성 등 많은 기업이 그 지역에 입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토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국토 내 물류이동 비용이 많이 든다. 남부 호치민 시에서 북부 하노이까지 오는 비용이 부산항까지 가는 것보다 비싸다고 한다. 공장입지 선정에서는 위와 같은 국토개발정책 기본방향과 물류비용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베트남은 공산당 중심의 사회주의형 국가이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86 년 'Doi Moi(쇄신)'를 선포함에 따라 베트남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공산국가)가 아니다.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수상, 국회의장의 4 두 체제로 국가권력이 그들 간에 분산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나의 전반적 소감으로는 이들 4 개 권력집단이 적절히 견제·균형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그것이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베트남이 가진 강점인 것 같다.

넷째) 베트남은 행정부와 공산당이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양두(兩頭) 체제이다.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은 행정부가 세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지만 '인민의 소리' 전달과 지역내 동향파악과 감시는 주로 공산당 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 구상, 집행 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인민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수립도 필요하다. 사업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당 관련 인사를 포함 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다섯째) 베트남은 FTA, WTO 등 국제경제통합에 능동적이고 개방 지향적이다.

베트남은 2007 년 WTO 에 가입한 이래 개방지향적인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고 개도국으로서는 드물게 FTA 협상과 체결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EU, EFTA와 FTA 체결을 협상 중이며 작년 12 월에는 한국과 FTA 를 타결하고,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맺었다. 또한, TPP, RCEP 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작년말 현재 40 여개국과 FTA 를 체결 또는 협상 중이다. 따라서, 수 년 안에 폭넓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베트남이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한국-베트남 FTA 에서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이 병렬적으로 인정되는데, 이 곳 생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다.

여섯째) 베트남은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경제 체제(Socialist Oriented Market Economy)이다.

생산요소 중의 한 가지인 토지는 국유(인민 전체의 것)로 되어 있고 기업, 개인은 '사용권(right to use)'만 인정될 뿐이다. 토지사용권은 그 목적, 대상, 사용자 등에 따라 세분화 시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아무리 큰 빌딩이라도 건물소유권만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업체도 마찬가지다.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기술 부분은 매우 시장 경제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시장 경제적이다' 라는 인상이 들 때도 있다 (예: 핸드폰 구입시 보조금 없음).

일곱째) 베트남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고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성향적 국가이다.

나의 인상으로는, 베트남은 매우 유교적·가족 중심적 문화, 흔적, 성향이 남아 있는 나라라고 본다. 조상숭배, 장유유서(長幼有序), 경로사상, 토속 신앙 숭배 등이 그러하다. 공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각종 행사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여덟째) 베트남은 실리 지향적 사회이며 협상에 능숙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베트남은 국가 외교정책 운용, 사회 지배 윤리, 인간관계 등이 우리나라(사람) 같이 여론, 감정, 체면보다는 실리 중심이라는 인상이 든다, 기업 운영, 고용계약 시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따라서, 인적·기업적 네트워크 구성이나 거래 시에는 무언가 '이해관계 또는 필요성의 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태도가 표변하여, 인정(人情)에 입각한 인간관계를 갖는 데 익숙한 한국인들은 실망하고 서운해 할 수 있다.

아홉째) 인적 네트워크 구성, '량 보다 質', '능률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내가 근무한 두 정부기관의 경우를 보면, 근무자들이 상호 특별한 인적 관계(예: 부부, 자녀, 친척, 제자)인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인력충원이 공개모집 보다는 연고에 따른 추천 채용이 많아서 그러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사업무 관리에도 '머릿수(量)'보다는 '적절한 인재(質)'를 구하여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경영자세가 필요하다.

맺는 말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를 고민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기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류 붐'도 그에 한 몫하고 있다.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물품, 한국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나라이다. 한국-베트남 FTA는 이에 더욱 좋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FTA 시대에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 유럽, 미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하고자 투자계획을 구상할 때 살펴볼 거시적 사항들을 알도록 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

전 세계관세기구 WCO

원산지담당관/관세사

박 재 호

jhpark4321@naver.com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제 69 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

용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혼합조미료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냉동 콩치 등 11개 품목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가 적은 냉동 민어와 고추장 등 4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퍼센트포인트부터 12퍼센트포인트까지 인하하여 22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

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 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4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7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분산성 염료 등 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3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하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액화천연가스는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적용하고,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산성 염료 등 5개 품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31개 품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2]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수입전량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 체선료의 과세 여부 (2011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안건1)

I. 사실관계

□ 거래내용 및 운송흐름



•수입자는 발전전문회사로, 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항의 전용부두를 통해 유연탄을 반입하며, 선적항에서의 체선료와 조출료는 선사와 유연탄 공급자간에 정산

•지정 하역항에 입항

-운송 선박이 외항 특정지점에 도착하면 도착보고(Arrived), 검역입항허가(F.P.Granted), 본선 하역준비완료 통지[NOR(notice of readiness) Tendered], 본선하역준비완료 접수(NOR Accepted)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본 건의 경우 위 절차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짐

•전용부두에 접안(Berthed)한 후 하역을 개시(Unloading Commenced)하고 하역완료(Unloading Completed)하며, 하역완료 시점에 정박시간(Lay time)은 종료되고, 선박은 출항함

•하역항의 체선료와 조출료는 하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입자와 선사간에 정산함

□ 수입항 체선료 발생경위 및 산정방법

$$\text{체선료} = \{\text{정박시간(Laytime)} - \text{허용정박시간(Time Allowed)}\} \times \text{체선료율}$$

•정박시간: 정박시간은 본선하역준비완료 통지 후

24 시간 경과시점 또는 실제하역시작시점 중 빠른 시간에 개시하며, 하역완료시에 종료됨

•허용 정박시간: 선적물량을 일일 하역량으로 나눈 시간

•정박일수 계산서에 따라 정박시간이 허용 정박시간을 초과할 경우 체선료가 발생하고, 그 미만일 경우 조출료가 발생함

II. 쟁점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가 관세법시행령 제 20조 제 5 항의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

III. 결정

•체선료의 청구권 발생시점

-체선료는 정박시간이 정박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에 약정된 체선료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Penalty 로서, 정박허용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그 청구권이 발생함

•체선료의 청구권 발생시점에 따른 구분

-본 건의 경우 접안(본선하역준비완료) 전 정박

허용시간이 초과되어
 체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며, **본선하역준비
 완료시점 이후 체선료**

비용	부담 주체	선적항에서 발생	수입항에서 발생	
			본선하역준비 완료 전	본선하역준비 완료 후
체선료	판매자	이미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구매자	과세 O	과세 O	과세 X

**청구권의 발생한 경우 가산대상 운임 등에 해당
 하지 않음**

-만약,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체선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선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
 하는 체선료에 대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관세청은 '본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수입화물의
 특성 등에 따른 하역형태(난바다하역, 접안하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접안하역의 경우 본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NOR(Notice of Readiness) Tender
 시점이 아니라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음(관세청 적부심사
 제 04-040, 2005.2.2)

IV. 참고 사항

□ '본선하역준비완료'의 해석 기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
 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에 대해 시행
 령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
 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